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3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신성범・이종욱・김종양

엄태영 · 김승수 · 임이자

조지연 • 박정하 • 조은희

구자근 · 김장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빈집은 132,0 52호이며 이중 3분의 2가 넘는 89,696호가 농어촌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상 이러한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및 빈집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붕괴, 화재 등의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 등으로 주택 개량사업 등 관리에 나서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 빈집이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2024년 이후 일몰 예정인 농어촌 주택개량취득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음.

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 빈집 등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지방세 특례 지원을 이어가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아 혅 했 개 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 ①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 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 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 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 ----- 2027년 12월 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과 31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 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까지 해당 시・군・구에 1년 이 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	
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	
으로 한정한다.	<u>.</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